

3차 상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

2026-03-06

- 자사주 의무소각안을 포함하는 3차 상법 개정안(2월25일 국회 본회의 통과)이 3월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음
- 공포와 동시에 법적 효력이 발생할 예정으로 신규 자사주 취득분은 1년 이내, 기보유 자사주는 1년 6개월 이내 소각이 의무화되며, 자사주를 교환 또는 상환대상으로 하여 사채발행이 금지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음
- 다만 임직원 보상 등의 사유 발생 시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예외적으로 자사주의 보유 또는 처분이 가능함
- 자사주 보유 시 주주총회에서 대주주의 의결권이 강화되고, 경영권 분쟁 시 우호세력과의 자사주 교환 등을 통해 자사주는 실질적으로 경영권 방어 역할을 해왔음
- 따라서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높지 않을 경우 자사주 소각으로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
- 자사주 소각으로 기업가치제고에 기여할 수 있으나 안정적인 경영권 유지를 위한 대안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시점

3차 상법개정안 주요 내용

- 1) 자기주식에 의결권 또는 배당을 받을 권리 등이 부여되지 아니함을 명시함
- 2) 자기주식을 교환 또는 상환 대상으로 하여 사채를 발행하지 못하도록 함
- 3) 자기주식은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함
- 4)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원칙적으로 소각하도록 함
- 5) 임직원 보상 등 일정한 사유가 있어 회사가 작성한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이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, 그 승인된 계획에 따라 자기주식을 예외적으로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게함
- 6) 회사가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때에는 각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하도록 하고, 임직원 보상 또는 우리사주제도 실시 등 일정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처분할 수 있게 함
- 7) 회사가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때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신주 발행절차를 준용함
- 8) 회사가 취득한 모든 자기주식은 이사회 결의로써 소각할 수 있음을 명문화함
- 9) 회사의 합병·분할시 자기주식에 분할신주를 배정하지 못하도록 함
- 10)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 승인 없이 자기주식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의 내용에 위반하여 자기주식을 보유·처분한 경우, 이사 개인에 대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
- 11) 이 법 시행 전에 회사가 취득·보유하고 있는 기존 자기주식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 소각의무를 부과하고, 기존 직접취득 자기주식의 기준일을 이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설정하는 한편, 외국인 투자 등 제한되는 회사에 대한 예외를 규정함

자료: 법제사법위원회, SK증권

자사주 비율 상위 30위 기업과 최대주주 지분율

기업명	자사주	최대주주 지분율	기업명	자사주	최대주주 지분율	기업명	자사주	최대주주 지분율
인포바인	54.2%	17.4%	영웅	32.8%	25.2%	디에이피	29.2%	47.9%
신영증권	53.1%	20.6%	SNT다이내믹스	32.7%	45.3%	네오위즈홀딩스	29.0%	45.1%
일성아이에스	48.8%	38.2%	제일연마	32.2%	52.0%	중앙에너지	28.8%	49.9%
조광피혁	46.6%	30.7%	전방	32.2%	16.5%	롯데지주	27.5%	43.5%
텔코웨어	44.1%	41.1%	대한방직	31.8%	32.0%	INVENI	27.4%	64.8%
부국증권	42.7%	30.3%	대한제강	30.9%	47.5%	셀바이오텍	27.2%	25.0%
매커스	38.6%	12.6%	샘표	29.9%	48.4%	한국경제TV	27.1%	47.1%
모아텍	35.8%	50.9%	대웅	29.7%	38.1%	신대양제지	26.7%	59.8%
엘엠에스	35.0%	33.1%	한샘	29.5%	36.0%	미래에셋생명	26.3%	59.2%
대동전자	33.4%	60.4%	YW	29.3%	24.3%	코텍	25.9%	38.5%

자료: Quantwise, SK증권

주: 3Q25 기준

COMPLIANCE NOTICE

작성자(최관순)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
본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

당사는 자료공표일 현재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.

중독별 투자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.

투자 판단 3단계(6개월/1년/15% 이상) > 매수/-15%~15% > 중립/-15% 미만 > 매도